

[]다단계판매업 []휴업 신고서
[]후원방문판매업 []폐업
[]영업재개 []영업재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일
신고인	상호	등록번호	
	소재지	전화번호	
	대표자의 성명 (서명 또는 인)		
신고 항목	기간	부터	까지
	휴업		
	폐업		
	영업재개		
	사유		

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3항·제29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([]휴업 []폐업 []영업재개)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※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.

공정거래위원회 ·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
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

귀하

첨부서류	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원본(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) ※ 등록증을 분실·훼손한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[등록증 분실·훼손 사유]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처리
--------	---	----	---	----	---	----

신고인

처리기관: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